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2-2024)

2022. 3.

교육부
[대입정책과]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01
II. 그간의 성과 및 개선사항	02
III. 2022~2024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06
IV. 선정평가 계획	10
V. 사업관리 계획	14
VI. 향후 추진일정	17
< 불 임 >	
[붙임1] 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18
[붙임2] '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20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대입정책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대입전형에 대한 수험생·학부모의 신뢰 회복**
 -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각 대학이 대입 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의 협조를 지속 확보할 필요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등을 고려하여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개선 유도 필요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조**
 -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각 대학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진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입학전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고교교육 혁신에 따른 대입전형 변화방향 모색 필요**
 - 고교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 등 고교 교육체계의 혁신을 뒷받침 하고,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25~)과 함께 **대입에서의 변화방향**이 제시될 필요
 - '22~'24년은 그에 앞서 대학이 새로운 고교교육 체계를 반영한 **대입 전형을 연구·기획**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적극적 지원 필요

□ 사업 추진경과

- ('07~'13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추진
- ('14~'21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추진
 - ※ '18년부터 2년 단위(1+1) 사업으로 개편하여 공정하고 내실있는 대입전형 운영 지원
 - ※ ('14) 65교 600억 → ('15) 60교 500억 → ('16) 60교 449억 → ('17) 62교 507억 → ('18~'19) 68교 총 1,106억 → ('20~'21) 75교 총 1,243억
- 사업 개편연구 추진 및 현장관계자·전문가 FGI : '21. 8 ~ 12월
- 사업 기본계획(시안) 의견수렴(공청회 등) : 2. 14. / 2. 23. ~ 24.

II. 그간의 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1 주요실적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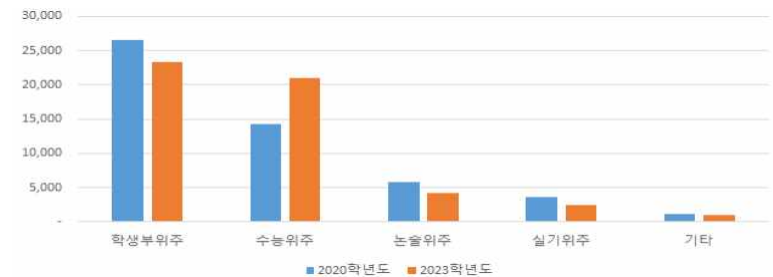
(1) 대입전형 간소화 및 쏠림 현상 완화

- 대학 입학전형을 5개 유형*으로 표준화하고, 전형요소 간소화**를 유도하여 학생·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에 기여
 - *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위주(종합),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논술위주
 - ** 전형 수 : ('14학년도) 수시 4,21개, 정시 2,65개 → ('20학년도) 수시 2,78개, 정시 1,35개
전형서류 축소 : ('22학년도~) 교사추천서 폐지, ('24학년도~) 자기소개서 폐지
- 대입전형 간 균형을 도모하여 대학 진학 경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 하되,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은 축소**
 - < 전형별 모집비율 변화 : 사업 참여대학 vs. 미참여 대학 > (단위 : % / %p)

구분	사업 참여대학			미참여 대학		
	2020	2023	증감	2020	2023	증감
학생부종합	33.2	30.9	△ 2.3%p	13.5	13.5	-
학생부교과	30.6	33.6	3.0%p	60.2	61.1	0.9%p
수능위주	23.7	25.9	2.2%p	15.4	12.3	△ 3.1%p
논술·실기위주	10.9	6.9	△ 4.0%p	10.9	13.1	2.2%p

- 특히, 그간 학생부종합 및 논술위주 전형의 운영 비율이 높았던 수도권 16개 대학의 전형 간 모집비율이 균형적으로 개선
 - < 전형별 모집비율 변화 : 수도권 16개 대학 > (단위 : % / %p)

구분	학생부위주	종합		교과	수능위주	논술위주	실기위주	기타
2020학년도	51.6	45.3	6.3	27.8	11.3	7.1	2.2	
2023학년도	44.9	33.8	11.1	40.5	8.1	4.7	1.8	
증감 (%p)	△ 6.7%p	△ 11.5%p	4.8%p	12.7%p	△ 3.2%p	△ 2.4%p	△ 0.4%p	



(2) 대입전형 운영 및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규정·지침* 및 절차 완비**
 - * (예) 전형자료 부정확인 및 입학최소 기준 /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 평가위원 점수 차이 조정방안 / 다수-다단계 평가점수 산출방안 등
- 대학이 **적정 규모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평가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기반 확보**
 - * 지원대학 평균 전입사정관 규모(명) : ('15) 12.8 → ('17) 13.5 → ('19) 13.9 → ('21) 13.3
 - ** 지원대학 평균 입학사정관 교육시수 확대 ('20년 → '21년)
 - 전입사정관 : (경력) 122.0시간 → 136.7시간 / (신임) 144.3시간 → 150.2시간
 - 위촉사정관 : (기존) 33.8시간 → 51.6시간 / (신규) 43.5시간 → 57.5시간
- **적정 수 입학사정관 확보에 따라 전입사정관 1인당 모집인원* (평가대상) 감소 및 지원자 1인당 적정 수준의 서류평가 시간** 확보 등 학생부종합 전형 평가 내실화 효과 발생**
 - * 전입사정관 1인당 학생부종합 전형 모집인원 : ('19) 69.6명 → ('20) 66.7명 → ('21) 61.9명
 - ** 학생부종합 전형 지원자 1인당 서류평가 시간 - 유형1 : ('20) 28.5분 → ('21) 26.1분
- 유형2 : ('20) 20.9분 → ('21) 33.6분
- **▲외부 공공사정관 활용, ▲외부인사 평가 참관, ▲평가과정 녹화 보존 등 전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학별 과제* 수행 지원**
 -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 ('20년) 8개교 시범운영 → ('21년) 전체대학 확대 운영
☞ ('21년) 공공사정관 활용 8개교 / 외부인사 평가 참관 28개교 / 평가 녹화보존 39개교

(3) 대입정보 제공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활동 활성화

- 멘토링·진로상담, 전공체험 등 고교생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상담 및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입시정보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 노력**
 - < 고교-대학 연계활동 운영 실적 >

(단위 : 개교 / 명)

추진연도	① 진로·진학 프로그램						② 정보제공 활동					
	멘토링		전공체험		학부모 연수		설명회		모의전형		대입상담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대학	인원
2019	44	142,643	67	432,546	38	21,748	67	3,339,027	66	155,209	38	21,748
2020	44	149,053	74	605,616	40	30,510	74	2,882,386	74	161,306	40	30,510

(4)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규모 확대***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입학 이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추수지도(멘토링·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제공**
 - <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 현황 : 사업 참여대학 vs. 미참여 대학 >
- | 구분 | 사업 참여대학 | | 미참여 대학 | |
|-----------|--------------|--------------|---------|---------|
| | 2020학년도 | 2023학년도 | 2020학년도 | 2023학년도 |
| 정원 내 모집인원 | 5,326명 | 7,316명 | 989명 | 2,476명 |
| 모집비율 | 2.68% | 3.61% | 0.69% | 1.74% |
| 정원 외 모집인원 | 15,116명 | 15,306명 | 8,769명 | 8,976명 |
| 모집비율 | 7.6% | 7.6% | 6.1% | 6.3% |
- 지역 우수인재의 대학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학전형 운영** 장려에 따라 **지역인재 모집규모 지속 증가**
 - ※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계획)현황(전체대학 기준) : ('21) 86개교, 16,521명(4.8%) → ('22) 92개교, 20,783명(6.0%) → ('23) 93개교, 21,235명(6.1%)
 - 특히, **2020년 사업부터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전형 운영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출신지역 쏠림 현상 (수도권 > 비수도권)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22학년도~**)
 - ※ '19~'21년 고기사업을 계속 지원받은 수도권 대학 27개교 기준 :
 - 지역균형선발 모집비율(계획) : ('21) 5.1% → ('22) 11.4% → ('23) 11.6%
 - '21학년도 신입생 출신지역 : (수도권) 53,605명, **70.4%** > (비수도권) 22,302명, **29.3%**

2 개선 필요사항

(1) 고교교육과 대입전형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0~'21년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집중**
 - ※ 사업 평가지표(100점 만점) 중 55%가 공정성 및 투명성 관련 지표로 배정
- 이에, 전형 운영의 공정성 기반 구축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고교교육 내실화에는 실질적 기여가 저조하다**는 비판 존재
- 고교와 대학 간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 세부 추진과제로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하고 있으나,

- 양자 간 상호작용이라기 보다는 고교·학생 대상 입시설명회 및 상담 등 대학이 대입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 대부분

▶ '22~'24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전면 도입(25)되기 전 그에 맞는 대입전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고교-대학 간 협력과 대학의 전형개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2) 입학사정관 고용안정성 및 역할 인식 개선 필요

○ 그간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인건비 지급에 국고의존도**가 높아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한계

* 전임 입학사정관 중 채용사정관 비율 : ('14) 77% → ('21) 83%
전임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무기계약직(정년보장) 비율 : ('14) 68% → ('21) 74%

** 입학사정관 인건비 재원 비중(평균) : (국고지원금) 72% > (대학 자체재원) 28%

○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라는 인식으로, 해당 전형의 운영 여부에 따라 채용규모가 결정되는 등 대학 내 역할이 한정적

▶ 입학사정관은 학생선발 분야의 전문가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대학이 핵심인력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조직·관리할 필요

(3) 학생부종합전형 위주 관리로 사업 성과 확산에 한계

○ 사업내용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운영의 내실화 및 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학종 미운영 대학의 사업 참여 제한

▶ 대학별 다양한 학생선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관리·지원 대상을 학종 미운영 대학까지 확대하고 그간의 사업 성과 확산 필요

(4)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조정 필요

○ 재정지원 탈락·선정을 결정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다보니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도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

* '18년부터 2년 단위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음에도 1차년도 사업수행 후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탈락대학과 신규대학을 선정하였음(1+1 사업구조)

▶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고교교육체계를 반영하여 대학이 안정적으로 대입전형을 설계·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연장할 필요

Ⅲ. 2022~2024년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1 사업 주요내용

□ 사업목표

○ 대입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책무성을 제고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 회복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5년 2월, 총 3년(2+1)

- 2022년 선정대학은 중간 탈락 없이* 2년('22.3월~'24.2월) 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1년('24.3월~'25.2월) 지원 여부 결정

* 단, 사업시행 1년 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며, 사업 신청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수행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경우 사업총괄위원회 심의에 따라 탈락 가능

○ (사업규모) 총 90개교 내외 선정·지원 / '22년 기준, 583.04억 원

※ 대학 지원금 575억 원, 사업관리운영비 8.04억 원

□ 지원 유형별 주요내용

○ 유형 I

- (지원목표) 대입전형 전반의 질적 고도화

- (지원대상) 모든 대학

- (지원규모) 70개교 내외 / 총 525억 원(교당 평균* 7.5억 원) 지원

* 대학별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채용사정관 규모 및 신분안정 계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유형 II

- (지원목표)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기반 구축

- (지원대상) 최근 4년('18~) 이내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

- (지원규모) 20개교 내외 / 총 50억 원(교당 평균* 2.5억 원) 지원

* 대학별 지원금은 대학규모, 입학사정관 채용 계획,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중복신청 금지 : 유형 I과 유형 II 중 하나를 택하여 사업 신청

2 추진과제 및 유형별 중점사항

□ 사업 추진과제

(1) 대입 공정성·책임성 강화

○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 및 평가운영 내실화

- 전형운영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감시체계 완비**
 - ※ (내부) ▲대입전형 공정성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입학전형 관계자 회피·배제, ▲평가과정 녹화·보존, ▲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 자체점검 실시 등
 - (외부)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등
- 수험생의 연령, 졸업연도, 학력취득방식(검정고시 등)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자격기준 개선**
- 학생부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과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지원자 1명당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
 - * ▲전형서류 블라인드, ▲평가 세부단계 다수위원 평가 실시, ▲다수위원 평가 시 위원 간 점수 조정,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적발 및 처리기준 마련 등
 - ** ▲모집인원 대비 적정규모 평가자 확보,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축소 노력 등

○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

- **기회균형선발*** 정원내·외 모집규모의 합리적 조정, 대상별 균형적 모집계획 수립, 선발방식의 적정성 확보 등 합리적 운영 노력
 - *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 지역인재의 대입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을 운영하고, 해당 전형의 **모집규모 및 선발방식의 적정성** 확보

(2)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 '대입전형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평가 요소는 축소·개선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을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하고 개선 노력

-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전형별 기준 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폐지 또는 기준 완화** 노력
 -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을 고려한 대학의 수험생 부담 완화 의지 평가

○ 대입전형 관련 정보공개 및 제공 노력

-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개표준안'에 따라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 모집요강 등)으로 공시
-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다양한 채널*로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학생도 대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노력**
 - * ▲입시설명회·박람회, ▲모의전형, ▲입시상담·컨설팅 ▲교사 연수·워크숍 등

(3)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적정규모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 대학의 모집인원을 고려하여 **학생선발 업무**(전형운영·관리, 평가 등)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고교 교육체계 변화에 대비한 **대입전형 기획·설계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입학사정관 확보**
- 입학사정관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1인당 전형 운영 및 평가 부담 완화** 등 처우 개선
 - * 고용형태에 따른 법정 계약기간을 준수하고(사업지속 여부와 계약기간 연동 지양), 인건비 재원을 대학 자체예산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국고의존도 완화 노력

○ 대학 입학조직의 전문성 강화

- 입학사정관의 **역할·경력 및 책임수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체계화** 하고 **내실 있게 관리**하여 대학의 전형운영 및 평가 전문성 강화
- 평가자 외에도 대학 입학부서 근무 직원 및 보직자 등의 대입 제도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4)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 고교 교육체계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 연구

-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등 새로운 고교 교육체계를 이해하고, **고교교육 변화에 알맞은 대입전형 변화방향 연구** 수행
 - ※ 고교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고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연구 참여 장려

○ **고교·시도교육청과의 양방향 협력 강화**

- 대학이 고교교육 변화를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고교·교육청에서도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모델 운영에 대학의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교 - 시도교육청 - 대학 간 협력 강화**

※ (예)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선택과목 개설 등), 교사-입학사정관 학습공동체 운영, 교육청-지역고교-지역대학 사례공유 워크숍 정례화, 입학사정관 고교 방문 연수 등

○ 학생부위주 전형 운영 시 **고교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및 과목 성취도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

※ 단,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이를 반영하고자 정성평가를 일부 실시하는 경우, 정성평가의 반영비율은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합리적 설정

□ **지원 유형별 추진사항(예시)**

유형 I	유형 II
① 대입 공정성·채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내·외부감시체계 완비 • 불합리한 자격기준 개선 • 학생부 정성평가의 객관성·신뢰도 확보 * 전형서류 블라인드, 다수-다단계 평가, 평가 지원 시스템 구축·활용 등 • 학생부 정성평가 내실화 계획 수립·이행 •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학생부 정성평가 운영 시)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기반 구축 • <좌 동>
②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수능최저학력기준 단계적 완화 등) •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개표준안 활용 및 대입정보 제공 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③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규모 입학사정관 확보 - 입학사정관 1인당 평가부담 완화 • 입학사정관 고용안정성 보장 및 인건비 국고의존도 극복 노력 • 입학관계자(입학사정관 및 입학처 직원 등)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보장* * 정규직 또는 정년보장 무기계약직 형태 •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참가지원 및 관리 • 대학 입학처 직원의 대입정책 이해도 제고 노력
④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및 개선 연구 (※ 고교, 시도교육청 합동연구) • 지역고교-시도교육청-지역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타 대학(미참여대학 포함)과 공동사업 운영 가능 • 고교 선택과목 및 성취도 평가 반영하여 평가구조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교육 변화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및 개선 연구 • 유형 I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 참여 또는 자체 고교-대학 연계 활동 운영 • <좌 동>

IV. 선정평가 계획(안)

1 사업신청

□ **신청 자격**

-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지원제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과학기술원 등),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본교와 분교(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는 별도 신청 가능

- (신청제한) ①'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 ②2022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③'대학기관평가인증' 불인증 대학 및 ④2022~2024년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학은 사업 신청 불가

※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유예 또는 효력정지 대학의 경우 사업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그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고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가능

- (자격상실에 의한 제재) 사업 선정 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거나 대학기관평가에서 미인증(불인증·인증유예·효력정지)되는 경우 그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국고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가능

* 해당 기간 동안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함이 원칙이나, 대학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이후 사업기간은 사업수행 포기 가능

□ **신청 요건 : ①국고지원금에 대한 대응투자, ②전형비율 조정계획**

- (대응투자) 국고지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대응투자
※ 사업신청서 작성 시 '22년 ~ '23년 대응자금 마련 및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유형 I) 국고지원금의 15%를 신청요건으로 하되, 초과 확보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 (※ 초과확보분(%p) 구간에 따라 최대 3점)

- (유형 II)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 추가확보에 따른 가점 없음)

○ (전형비율 조정) '23~'24학년도 전형비율 조정계획 평가

※ 단, '20~'21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24학년도 조정계획만 제출

구분	전형비율 조정 기준
수도권대학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 일부대학* 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지방대학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가나다 순)

2 평가계획(안)

□ 기본 방향

- 대입 전형 전문성을 갖춘 대학, 고교, 시도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로 선정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신청대학 중 신청요건을 갖춘 대학에 한하여 선정평가를 실시
- '23~'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22년 사업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상대평가 실시

□ 평가 구조 및 절차

- (평가구조) 유형별 분과를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유형 I) 소재지와 대학규모를 고려하여 4개의 평가소위로 구분

※ (1소위) 수도권 대형 / (2소위) 수도권 중소형 / (3소위) 지역 대형 / (4소위) 지역 중소형

- (유형 II)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2개의 평가소위로 구분

분과1 - 유형 I 대학		분과2 - 유형 II 대학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
1소위 - 대형	3소위 - 대형	1소위	2소위
2소위 - 중소형	4소위 - 중소형		

※ 단, 사업신청 결과 평가소위 간 평가대상 수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추가구성

- (평가절차) 서면평가(1단계) → 면접평가*(2단계) 순으로 평가 실시 후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최종 심의·확정

* 면접평가는 서면평가 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유형별 평가 주안점 및 평가지표(안)

- (유형 I) 전형 운영 기본역량을 바탕으로 내실화·고도화 계획 평가

평가영역	세부영역 및 지표	배점	비고
①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35 / -15~0)	■ 대입전형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 기반 구축 여부 - 내·외부감시체계 완비, 평가 객관성·신뢰도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 및 관리·운영방안 마련 여부 등(-12~0) - 연령, 졸업연도, 학력취득 방식 등 지원자격 완화(-2~0) - 퇴직입학사정관 관리 계획(취업제한 심의 등)(-1~0)	-15~0	기본역량
	■ 평가운영 내실화 계획 - 평가자 1인당 평가 건수, 지원자 1인당 평가시간 보장, 평가 시 전입사정관 참여 확대 등(10) - 평가지원 시스템 구축·활용 등 평가 신뢰도 제고 노력(5)	15	
	■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 -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선발 학생 지원(12)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선발규모·방식의 적정성(8)	20	
② 수험생 부담 완화 (20 / -10~0)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 적정 전형 수 운영,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5) - 전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10)	15	
	■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 - 평가기준 공개(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3) - 정보제공노력 강화(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제고 노력 등)(2)	5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10~0	기본역량
③ 학생선발 기능강화 및 전문성 제고 (20)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계획 - 모집(평가대상)규모 대비 채용사정관 확보(5) -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현황 및 계획(5)	10	기본역량
	■ 입학관계자 전문성 강화 노력 -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체계화·내실화 계획(8) - 대학 입학부서 직원의 대입제도·정책 이해도 제고(2)	10	
④ 고교교육 연계성 (20 / -15~0)	■ 고교 및 시도교육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고교-시도교육청-대학(복수 가능)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5) -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선택교과 개설 지원 등)(5)	10	
	■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 (1차 위반) 최대 5점 감점 / (2차 위반)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병행 / (3차 위반) 차년도 사업 배제	-15~0	기본역량
	■ 고교교육 반영 전형연구 및 평가체계 개선 계획 - 평가체계에 고교 선택과목 및 성취도 평가 반영 계획(5) - 대입전형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결과 활용 계획(5)	10	
예산계획 (5)	■ 예산계획의 적절성	5	
총계		100점(-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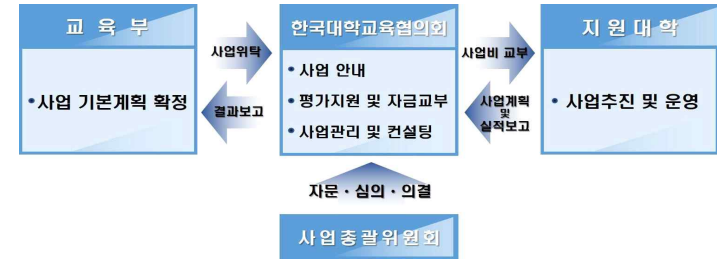
가. 감점	가점	■ 인건비 대응투자 15% 초과 확보 - 대응투자비율 초과분에 따라 : (5%p 이하) +1점 / (5%p 초과 ~ 10%p 미만) +2점 / (10%p 이상) +3점	0~+3
	감점	■ 2020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 부정·비리대학 제재	총괄위원회 별도 심의
	가감점	■ 2021년 지원사업 실적평가	-5~+5

○ (유형 II)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전형 기반 구축 및 운영 의지 평가

평가영역	세부영역 및 지표	배점
1 대입 공정성 및 책무성 (35)	■ 대입전형 공정성 기반 구축 - 대입전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외부감시체계 구축(6) - 불합리한 자격기준 완화(2) - (학생부 정성평가 운영 시) 평가 객관성, 신뢰도 확보를 위한 평가방식 도입 및 관련 기준·절차 마련(7)	15
	■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 -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선발 학생 지원(12)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선발규모·방식의 적정성(8)	20
2 수험생 부담 완화 (25 / -10~0)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 적정 전형 수 운영,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5) - 전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10)	15
	■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 - 평가기준 공개(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10) - 정보제공노력 강화(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제고 노력 등)(10)	10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10~0
3 학생선발 여건 (15)	■ 입학사정관 확보 계획 - 대학의 학생선발 여건을 고려한 입학사정관 확보 및 활용 (대학 내 역할) 계획(10)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5)	15
4 고교교육 연계성 (20 / -15~0)	■ 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고교-시도교육청-대학(유형I)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자체적인 고교-대학 연계활동 운영 계획	10
	■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 (1차 위반) 최대 5점 감점 / (2차 위반) 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병행 / (3차 위반) 차년도 사업 배제	-15~0
	■ 고교교육 반영 전형연구 및 평가체계 개선 계획 - 대입전형 연구 추진계획 및 연구결과 활용 계획(5) - 평가체계에 고교 선택과목 및 성취도 평가 반영 계획(5)	10
예산계획 (5)	■ 예산계획의 적절성	5
총계		100점 (-25~0)
감점	■ 부정·비리대학 제재	총괄위원회 별도 심의

V. 사업 관리계획

1 사업 관리·운영체계



○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총괄
- 사업 위탁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관리비 집행 관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업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운영 관리
 - 지원대학과 사업협약 체결 및 지원대학의 사업계획서 승인
 -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 각종 평가 운영 및 결과관리
 - 지원대학의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정산**
- * 점검결과 사업운영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가능 / ** 정산결과는 교육부에 보고

○ 사업 지원대학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 사업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 대교협 승인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 ** 협약내용 위반 시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차년도 평가 감점, 사업배제 등 제재 가능
- 사업비 편성, 집행 및 정산(매년 2월 말)

※ (편성) 사업비 편성 시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붙임1) 준수
 (집행) 별도 계정(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 설치,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대응자금 우선 집행, 사업비 교부 이전 지출도 사업기간 내라면 국고지원금으로 사후정산 (정산) 집행결과보고서(예·결산보고서 포함) 제출, 사업비 발생 이자는 사업종료 시 전액 반납

2 사업 성과관리

□ 사업 총괄위원회 구성운영

- (역할)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지원대학 제재 등 사업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수행
- (구성) 대입전형 관련 전문가*, 교육부 사업 담당 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 담당 실장 등으로 구성
* 대학, 고교,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를 적정 비율로 위촉

□ 운영실적 및 성과 평가

- (연차평가) '22년 추진실적 및 '23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3년 사업비 차등 지원
 -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하여, '미흡'인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전년 대비 20% 내외 감액하여 '우수' 대학에 배분
- (단계평가) '22~'23년 추진실적 및 성과, '24년 사업운영 고도화 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후 1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단계평가 시 신규대학 추가선정 여부는 추후 결정
- (결과평가) 전체 사업 종료 후 그간의 실적·성과에 대한 평가 추진

□ 컨설팅 및 성과확산 등

- (컨설팅) 유형 II 대학의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유형 I 대학과 대교협, 외부전문가 등으로 전문멘토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제공
※ 유형 I 대학 중에서도 컨설팅이 필요한 대학은 별도 신청 가능
- (사업성과 및 연구결과 공유·확산) 대학 간 대입전형 개선 사례, 고교·교육청 협력활동 성과, 대입전형 관련 연구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포럼 등 추진

3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통 사항

- 본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통 운영·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여 제재
-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적은 대학(교육비 환원을 100% 미만)의 경우 지원금 삭감 등 제재 조치 가능

□ 대입 공정성·신뢰성 위반에 대한 제재

- (수혜제한 강화) 대입전형 신뢰도 제고 및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입시비리 사안에 대한 수혜제한(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강화
 - (수혜제한 강화 사유) 입시비리로 인하여 대학의 주요보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기소된 경우

* 대학 사학재단 이사(장), 대학의 총장·부총장·처/실/본부장 등 보직자

- (수혜제한 기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통 운영·관리 매뉴얼」의 처분유형별 수혜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대학 입시비리로 인한 사업 수혜제한 강화 기준>

제한사유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행정·감사처분	(중징계) 사업비 삭감 및 감점 (경징계) 수혜제한 가능(재량)	(중징계) 매뉴얼과 동일 (경징계) 사업비 삭감 및 감점
형사판결	형사판결의 대상자 및 양형 수준에 따라 사업비 삭감 및 감점 수준 결정	입시비리로 인한 형사판결인 경우 수혜제한 수준을 한 단계 상향 조정 가능
입시 부적정 행위 (공정성 검증 등)	별도 규정 없음	사업비 5% 이내 삭감 선정평가 1% 이내 감점

※ 사업비 삭감 및 평가점수 감점 규모는 사안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중단 및 참여배제) 대입 공정성·신뢰성 위반행위가 사업의 목적·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등 그 심각성이 중대한 경우 사업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차년도(또는 차기) 사업배제 등 가능

VI. 향후 추진일정(안)

-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3월 3주
- 사업 공고 및 지원대학 선정
 - 공고 및 신청서 예비접수* : 3월 3 ~ 4주
 - * 사업 신청접수 의향을 사전에 밝히는 절차로, 예비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3월 4주
 - 사업신청서 제출 : ~ 4월 말
 - 선정평가 실시 : 5월 1 ~ 2주
 - 총괄위원회 심의 및 선정대학 확정 통보 : 5월 3 ~ 4주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협약 체결 : 6월 초
 - * 대학별 2022년 국고지원금 확정 후 사업예산 편성계획 등 수정
- 2022년 지원사업 추진 : 6월 ~ '23년 2월
 -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지원대학 간 워크숍 : 미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붙임1

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비고
1. 인건비	<p>[편성 가능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사정관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등 포함) - 교수사정관 보직수당 - 위촉사정관에 대한 수당 -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단, 대응자금으로 편성 가능) <p>[편성 불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 대학의 교직원인 전환사정관 및 교수사정관 기본 인건비 - 사업 계획서 작성사 등에 대한 보상금 수고비 성격의 수당 	국고 지원금의 60% 이하 편성
2. 운영비	<p>[편성 가능 항목]</p> <p>①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훈련 등 전문성 향상 지원 비용 - 대입전형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 기타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비용 <p>② 고교교육 내실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정보 제공(대입상담, 진로진학박람회, 모의전형 등) - 고교-대학 연계활동(고교학점제 공동운영 등) - 고교 교사의 대입전형 이해도 제고 지원을 위한 활용 경비 - 대학-시도교육청-고교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비용 <p>※ 사업 목적 이행을 위해 복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경우, ①, ②의 비용은 반드시 “공동사업”으로 예산 편성</p> <p>③ 학생 교육활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균형선발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비용 * 다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기숙사비, 교재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 <p>④ 사업 성과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필요한 비용</p> <p>⑤ 그 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품 및 기자재는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단, 국고 편성 불가) 	

항목	내용	비고
	<p>[편성 불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매입, 시설확충사업비, 비품·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 관련 항목 ○ 예비비, 제압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항목 ○ 학생선발 업무 담당자의 해외연수 및 해외 인사 초청 비용, 외국학생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등의 경비 ○ 홍보 물품 제작비, 대입 관련 광고비, 모집요강 제작비 ○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는 전형의 평가진행경비 ○ 사교육 기관과 연계된 모든 경비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회의비 및 식비, 고교 교직원 및 교육청 관계자 대상 접대성 경비 	
3. 연구비	<p>[편성 가능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간 공동연구(3~5개 기관, 연간 2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고교학점제 반영 전형설계, 전형결과 분석(종단분석) 연구 등 ※ 고교·시도교육청 참여 가능, 참여 시 대학에서 연구비 부담 가능 ※ 입학사정관(입학처 직원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가능 - 대입전형 개선 및 설계를 위한 개별대학 연구(총액 5,000만원 이하, 연간 2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대응자금을 활용하는 경우 1건당 총액 및 연간 건수 제한 없음 ※ 입학사정관(입학처 직원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불가 ○ 지정연구(연간 1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지정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한하여 연구 수행 ※ 입학사정관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가능 <p>※ 입학사정관이 다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1인 1건에 한하여 인건비 편성 가능 (단, 입학사정관 인건비 편성이 가능한 연구과제에 한함)</p> <p>[편성 불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접비(overhead) - 대입전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 - 동일한 주제의 반복된 연구 (단, 종단연구, 패널데이터 분석 연구의 경우 가능) 	

※ 구체적인 사업 예산 편성 기준은 「사업운영규정」에 따른다

붙임2 2022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대학)

※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10교) 중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1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